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5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한정애·이학영·송옥주

서영교 · 정성호 · 문진석

허종식・황 희・허 영

김주영 · 김영진 · 안도걸

임오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휴가산정기준이 근로일인지 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고,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연장 등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강화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의"를 "근로일을 기준으로 20일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	
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에 <u>10일의</u> 휴가를	<u>근로일을 기준으</u>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u>로 20일의</u>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